

'21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동국대학교 운영 계획서

1.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

□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(공통)

- 2021-1학기 재학중인 자
-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자(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동일)

□ 교내 근로

1. 일반교내근로

- 선발기준 : 순위방식
 - 한국장학재단 근로순위 1순위자(학자금지원구간 0~4분위 이내)
 -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

| 1순위 | 2순위 | 3순위 | 4순위 |
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면접 | 학자금지원구간 | 성적 | 직전학기 미선발자 |

- 대체장학생 선발기준
 -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로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확인자로서 근로기관(근로지)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
 - (1순위)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
 - (2순위) 학자금 지원구간 5-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
 - (3순위) 학자금 지원구간 7-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

2. 봉사유형(장애대학생 지원)

- 선발기준 : 순위방식
 - 한국장학재단 근로순위 부여자 또는 장애학생도우미유형 신청자

- 장애대학생과 동일학과 및 전공자 우선 선발
- 장애대학생 추천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근로기준에 흠결이 없는자 우선 선발 가능
- 봉사유형의 경우 연속 근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직전학기 선발자 우선 선발 가능
-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

| 1순위 | 2순위 | 3순위 | 4순위 |
|-----|---------|-----|-----|
| 면접 | 학자금지원구간 | 성적 | 학과 |

- 대체장학생 선발기준
 - 없음.

□ 교외근로

- 선발기준 : 순위방식
 - 한국장학재단 근로순위 1순위자(학자금지원구간 0~4분위 이내)
 - 동순위자의 경우 선발 순서

| 1순위 | 2순위 | 3순위 | 4순위 |
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면접 | 학자금 지원구간 | 성적 | 직전학기 미선발자 |

- 대체장학생 선발기준
 -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로서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확인자로서 근로기관(근로지) 신청자 중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선발
 - (1순위)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자 중 미선발자
 - (2순위) 학자금 지원구간 5-6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
 - (3순위) 학자금 지원구간 7-8구간 해당자 중 미선발자

2.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

□ 근로장학생 활동관리

- (사전교육) 각 기관별/부서별 자체 사전교육 실시
- (간담회) 각 기관별/부서별 자체 간담회 실시

□ 근로장학생 자격 관리

- 각 기관별/부서별 장학생 선발 후 학교담당자 최종 점검하여 재단포털 등록
- 학적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 시 국가근로진행 불가하며,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하고 변동 이후 활동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.
- 부정근로 적발시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의 부정근로 조치를 적용하여 처리하고 즉시 국가근로장학생 자격해제

부정근로 장학생에 대한 조치

◆(허위근로)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

☞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

-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
-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
-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

◆(대리근로)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

☞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

-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

◆(대체근로)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

☞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

- 10:00~11:00(1시간) 근로를 실시하였으나, 13:00~14: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

※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(객관적 근거제시 필요) 및 부정근로 자진신고* 시 제재대상에서 제외가능

* 부정근로의 주체(근로장학생 또는 근로기관)가 본인의 부정근로 사실을 재단에 신고한 경우, 해당 주체를 참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 가능

※ 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, 근로장학생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 제외 가능

근로기관 자격 관리

- 매년 초 국가근로장학 근로기관 자격 점검 후 예산배정
- 관리부실기관(출근부 제출 지연, 부정근로 발생 등)은 배정인원 회수
- 매월 국가근로장학 담당자에게 안내문 발송

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

- 근로활동 익월 16일이내(휴일인 경우 다음날) 본인계좌 장학금 지급
- 단,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일을 사전 안내 후 지급

3.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

교무학생지원팀

[국가근로장학금 사업담당자 현황]

| 성명 | 직위 | 담당자 연락처 | 담당자 이메일 | 근로장학업무 이외 타 업무 수행 여부 |
|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최호진 | 팀장 | 02-2260-3618 | skchoi@dongguk.edu | ○ |
| 조혜민 | 팀원 | 02-2260-3044 | chohyemin@dongguk.edu | ○ |

동국대학교는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사업 운영기준을 제출합니다. 아울러, 동 사업 운영기준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, 사업예산 미배정 및 환수, 사업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.